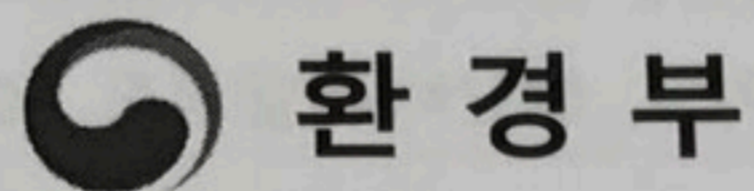


#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시행 방안

---

2018. 3. 28.



## 목 차

1.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추진 근거
2.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
3.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(안)
4.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 방식(안)
5. 경매 수익 활용 방향
6. 향후 추진일정



## 1.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추진 근거

### 시행령

- 제13조(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) ①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(이하 "1차 계획기간"이라 한다)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.
- ②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(이하 "2차 계획기간"이라 한다)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.
-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. 이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

- 2차 계획기간('18~'20) 운영방향
  - (유상할당) 무역집약도 30% 미만이고, 생산비용발생도 30% 미만 업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량의 3% 유상할당

## 2.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

### 무상할당 기준- 시행령 제14조 및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

-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100% 무상할당 적용
  - ① 무역집약도 30% 이상 또는,
  - ② 생산비용발생도 30% 이상 또는,
  - ③ 무역집약도 10% 이상 및 생산비용발생도 5% 이상
- 무역집약도 =  $\frac{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출액} + 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}}{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} + 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}}$
- 생산비용발생도 =  $\frac{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} \times \text{배출권 가격}}{\text{해당 업종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}}$

### 업종 분류 기준

- 2차 계획기간에는 업종의 경제적 특성, 산업계의 입장 등을 반영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소분류를 기준으로 업종 분류를 세분화
  - KSIC 소분류 총 228개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속한 소분류는 63개 업종
  - 할당대상업체별 KSIC 소분류는 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·고시에 근거 ('17.11.16)



## 2.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

### 시행령 별표1

- (제3호의 가)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 
단,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기준기간은 '15년~'16년으로 한다

### 매출액 및 부가가치생산액

-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자료(재무제표)를 기준으로 작성한 '13~'15년 통계 자료

### 수출액 및 수입액

- 관세청 수출입신고 자료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를 연계하여 KSIC 분류에 따라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'13~'15년 통계 자료

### 온실가스 배출량

- GIR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(NGMS)에서 집계하는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의 '13~'15년 배출량 통계 자료

### 배출권 가격

- '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부터 '16년 12월 31일까지 장내(거래소) 거래된 할당배출권(KAU)의 평균 거래가격 (16,772원/톤)

## 3.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(안)

###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소분류 기준

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	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
발전에너지	351	전기업	목재	162	나무제품 제조업
	352	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	제지	171	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
집단에너지 산업단지	353	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		179	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
			광업	051	석탄 광업
071	토사석 광업	정유		192	석유 정제품 제조업
음식료품	101		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	201	기초화학물질 제조업
	104		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	202	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
	105		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	203	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	106		곡물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	204	기타 화학제품 제조업
	107		기타 식품 제조업	211	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	111		알콜음료 제조업	212	의약품 제조업
	112		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	221	고무제품 제조업
	120		담배 제조업	222	플라스틱제품 제조업
섬유	131		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	유리	231
	134	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	요업	232	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
	205	화학섬유 제조업	시멘트	233	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
			철강	241	1차 철강 제조업
			비철금속	242	1차 비철금속 제조업
			주조	243	금속 주조업



## 2.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

### 시행령 별표1

- (제3호의 가)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 
단,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기준기간은 '15년~'16년으로 한다

### 매출액 및 부가가치생산액

-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자료(재무제표)를 기준으로 작성한 '13~'15년 통계 자료

### 수출액 및 수입액

- 관세청 수출입신고 자료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를 연계하여 KSIC 분류에 따라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'13~'15년 통계 자료

### 온실가스 배출량

- GIR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(NGMS)에서 집계하는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의 '13~'15년 배출량 통계 자료

### 배출권 가격

- '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부터 '16년 12월 31일까지 장내(거래소) 거래된 할당배출권(KAU)의 평균 거래가격 (16,772원/톤)

## 3.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(안)

###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소분류 기준

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	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	
발전에너지	351	전기업	목재	162	나무제품 제조업	
	352	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	제지	171	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	
집단에너지	353	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		179	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	
산업단지			광업	051	석탄 광업	정유
음식료품	071	토사석 광업	석유화학	201	기초화학물질 제조업	
	101	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		202	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	
	104	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		203	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	
	105	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		204	기타 화학제품 제조업	
	106	곡물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		211	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	
	107	기타 식품 제조업		212	의약품 제조업	
	111	알콜음료 제조업		221	고무제품 제조업	
	112	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		222	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	120	담배 제조업		유리	231	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
	섬유	131		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	요업	232
134		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	시멘트	233	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	
205		화학섬유 제조업	철강	241	1차 철강 제조업	
			비철금속	242	1차 비철금속 제조업	
			주조	243	금속 주조업	



### 3.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(안)

####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소분류 기준

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
기계	251	구조용 금속제품,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
	259	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	291	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
	292	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
	313	항공기,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
반도체	261	반도체 제조업
디스플레이	262	전자부품 제조업
전기전자	282	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
	283	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
	285	가정용 기기 제조업
자동차	301	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
	303	자동차 부품 제조업
조선	311	선박 및 보트 건조업
통신	612	전기통신업
	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	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
지정업종	소분류	소분류명
수도	360	수도사업
폐기물	370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
	382	폐기물 처리업
항공	511	정기 항공 운송업
	529	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
건물	471	종합 소매업
	551	숙박시설 운영업
	651	보험업
	681	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
	682	부동산 관련 서비스업
	853	고등 교육기관
	861	병원
	912	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

### 4.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방식(안)

####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

-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
-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(입찰일시, 할당규모, 입찰방식, 입찰조건,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고)

#### 경매 입찰 일시 / 장소

- 매 월 둘째 수요일 13:00 ~ 14:00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
- 입찰은 배출권거래소의 호가 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처리

#### 경매 입찰 참가 대상
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



## 4.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방식(안)



### 입찰 및 낙찰 방법

- (응찰 최저수량) 응찰 최저수량은 1,000톤으로 하고,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
- (낙찰 하한가)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,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
- (낙찰수량 상한)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 
\*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배정 가능
- (낙찰 순서) 유상할당업체의 낙찰은 응찰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
- (낙찰가격)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
- (납입 및 이전)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
- (결과 공개) 입찰, 응찰, 낙찰수량 및 낙찰가격을 포함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고

## 5. 경매 수익 활용 방향



### 해외 사례



유럽연합

- 각국 별로 경매수익의 최소 50% 이상은 기후 및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규정



캘리포니아

- 경매 수익금으로 온실가스 저감기금을 조성, 기금의 60%는 저탄소 대중교통, 초고속열차, 주택마련 등의 용도로 활용



퀘벡

- 모든 경매수익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reen Fund에 투입, '20년까지 33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집행할 계획

### 향후 계획

- 유상할당,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 후 확정



## 6. 향후 추진일정

###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
- 유·무상할당 판단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 구분(안)에 대한 의견 수렴
- BM 할당방식 및 GF 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 수렴
- 배출허용총량, 감축률 설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

※ 5월경 할당계획(안)을 마련하여 공청회 추진 예정(유·무상할당 업종 공개)

###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계획 확정

- 할당위원회('18.5월말) → 녹색성장위원회('18.6월중) → 차관·국무회의('18.6월말)

### 업체별 할당

- 할당 신청서 접수('18.8월) → 할당량 통보('18.10월) → 이의신청('18.11월) → 최종 확정('18.12월)

# Q&A